

「구미시 원평동 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 주차장  
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1월 5일

나. 제출자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1월 6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1월 19일

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도시건설국장 전 천 수

나. 제안이유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
-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
-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,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충전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운영사업자와 업무

## 협약을 통해 설치하고자 함

### ※ 업무협약 주요사항

기 관 명	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구미시	부지 제공(공유재산 유상허가)
민간운영사업자	충전기 구축비용 100% 부담 및 운영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제2항 및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,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.

## 다. 주요내용

### 1) 사업개요

가) 사 업 명 : 구미시 원평동 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  
주차장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사업

나) 기 간 : 2026. 1. ~ 2.

다) 설치대상지 : 원평동 112-1 일원

라) 주요시설 : 급속 충전기 1기, 완속 충전기 4기

### 2) 운영방법

가) 운영주체 : 민간운영사업자 등

※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·운영 사업자 협약을 통하여 선정

나) 운영기간 :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10년  
(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)

- 다) 운영범위 :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,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- 라) 운영방안 : 개방적 운영

※ 근거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11항

### 3) 전기충전기 설치계획

- 가) 설치장소 및 수량 : 설치대상지 1개소 / 충전기 5대  
(급속 1, 완속 4)\*

구 분	계	급속	완속	비고
대상지(개소)	1	1		
충전기(대)	5	1	4	

\* 설치대상지 현지실사 완료 후 수량 및 충전기종(급속 or 완속) 확정

#### 나) 설치대상지 (26년 준공 예정)

연번	구 분	총주차 면 수	수 량		담당부서	주 소	비 고
			급속	완속			
총계	1개소	89	1	4			
1	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	89	1	4	건축디자인과	원평동 112-1 외 2필지	신설

### 4) 향후 추진계획

- 가) 2026. 1. :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 
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
- 나) 2026. 1. :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협약
- 다) 2026. 2. : 사업 착수
- 라) 2026. 2. : 사업 완료

### 라. 참고사항

#### ○ 관계법령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, 제11조의3

-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#### ○ 본 동의안은

- 원평동 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(원평동 112-1 일원, '26.2.준공예정)에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를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# ○ 검토 결과,

- 원평동 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.
- 총 주차대수가 89면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50대<sup>1)</sup> 이상이므로,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인 5대<sup>2)</sup>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준을 충족함.
-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성 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---

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5  
 2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7

5. 토 론 요 지:

- 전기충전기 설치계획상 충전시설 5대 중 급속을 1대, 완속을 4대로 하였으나, 공공시설의 특성 상 주민들의 체류 시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장시간 충전해야 하는 완속충전기보다 급속충전기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전기충전기 설치계획 재검토 필요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